

[별표 10] <개정 2011.11.25>

행정처분기준(제17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둘 이상이면 그 중 무거운 처분기준(무거운 처분기준이 같으면 그 중 하나의 처분기준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따르고, 둘 이상의 처분기준이 같은 사업정지 또는 제한인 경우에는 무거운 처분기준에 나머지 각각의 처분기준의 2분의 1을 더하여 처분한다.

나.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준적용일은 최초의 행정처분일부터 같은 위반행위로 다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다. 행정처분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그 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 정도가 경미하여 위반행위로 인한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위반행위자가 처음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5년 이상 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 가스용품 제조사업 또는 액화석유가스 저장소 사용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공익을 위하여 특별히 행정처분을 감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라. 행정처분권자는 다목에 따라 처분을 감경하는 때에는 다음에 따른다.

- 1) 사업정지 또는 제한의 경우: 그 처분일수의 5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 2) 허가취소의 경우: 6개월의 사업정지 또는 제한

마. 행정처분권자는 행정처분 전에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권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선권고 기간에 위반사항이 개선되지 아니하면 제2호의 위반행위별 처분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2. 위반행위별 처분기준

위반행위	관련 법규	행정처분기준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가. 고의나 과실로 공중(公衆) 또는 사용자에게 현저히 위해(危害)를 끼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90일	허가취소
나. 법 제3조, 제4조 또	법 제9조	사업정지	사업정지	사업정지	허가취소

는 제6조에 따른 허가 기준이나 제6조의3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 하게 된 경우	제1항제4호	또는 제한 3일	또는 제한 20일	또는 제한 60일	
다. 법 제3조제2항에 따 라 판매지역을 위반하 여 판매한 경우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명령 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라. 법 제3조제3항 본문, 제6조제2항 본문을 위 반하여 변경허가를 받 지 아니하거나 제6조 의3제2항 본문을 위반 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마. 정당한 사유 없이 가 스 공급을 거절하거나 다른 사업자에게 가스 공급을 거절하도록 요 구하거나 권고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바.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사. 법 제13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0 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아. 법 제14조제1항에 따 른 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1 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자. 법 제14조제4항을 위 반하여 수요자의 요청 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 우	법 제9조 제1항제12 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차. 법 제1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3 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카. 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4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타. 법 제19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기검사 또는 수시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5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파. 법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6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하. 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회수명령 또는 공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7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거. 법 제2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8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너.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공급규정을 위반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19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더. 법 제25조제3항을 위반하여 액화석유가스를 판매 또는 인도하거나 판매 또는 인도할 목적으로 저장·운송 또는 보관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0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	
러.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방해·기피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1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머. 법 제34조를 위반하여 조정명령을 거부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2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1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허가취소
버. 액화석유가스 판매가격의 최고액보다 높은 가격으로 액화석유가스를 판매한 경우	법 제9조 제1항제23호	사업정지 또는 제한 3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20일	사업정지 또는 제한 60일	허가취소